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손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197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 손명수·김남근·김선민

김태년 · 김한규 · 남인순

박 정・송기헌・이훈기

정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·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 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,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%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에 체납 일수 1일당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금을 징수한다. 이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, 그 지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5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사용료 및 연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사용료의 징수 등) ① ~	제32조(사용료의 징수 등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
	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
	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
	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
	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
	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
	체납된 사용료에 체납일수 1일
	당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산
	출한 연체금을 징수한다. 이 경
	우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
	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
	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
	<u>로 정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⑥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
	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
	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
	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
	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, 그 지
	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5항
	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
	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

반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 라 징수할 수 있다.